

의안번호	2219789
의 퇴 인	김예지 의원
회 답 일	2026.08.21.
추계번호	26E33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5.2백만원, 2031년 7.9백만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3천 5백만원(연평균 7.1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부가가치세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안 제26조제1항제21호)	-5.2	-7.1	-7.4	-7.6	-7.9	-35	-7.1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21호 신설	○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설	-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안 제26조제1항제21호)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계
-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중소기업부서관 2026년 예산 편성내역을 바탕으로 추계함
 -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2023년 마련되었으나 2026년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어 관련 실적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예산 편성내역을 활용함
 - 추계기간 동안 업무지원인 서비스 정부지원금 대비 본인부담금 부담 비중이 2026년(정부:본인=95:5)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2027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¹⁾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
 - 직원 없이 혼자 안마방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사업주를 위한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취지임
 -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보조, 의사소통 지원, 경영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1) 장애경제인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함(「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3호)

- 동 제도의 운영 근거는 2023년 마련되었으나 2026년 예산(17.8억원)이 최초로 편성되어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서비스 공급가액의 5%와 이에 대한부가가치세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지원유형 및 내용은 유사하나, 서비스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비용부담 범위 등에서 차이 존재

[표 2]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자	□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지원유형 및 내용	□ 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 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 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지원한도	□ 제1유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내 □ 제2·3유형: 서비스 공급가액의 95% 이내로서 최대 300만원
비용부담	□ 서비스 공급가액의 5%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 필요
지원기간	□ 1년 이내(서비스 재신청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예산 편성 내역²⁾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저임금 상승률 전망치 등을 적용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세수효과를 산출
 -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공급가액 대비 정률(5%)로 설정되어 있어 임금 상승으로 업무지원인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그에 연동된 본인부담금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추계기간 세수효과가 증가한다고 가정함

2) 2023년 업무지원인 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5년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2024~2025년 시범사업 형태로 매년 40명의 1인 중증장애경제인을 선정,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2026년 4월 기준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17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정부지원금 16억 9,000만원(=115개사×1,500만원) 및 사업운영비 9,000만원으로 구성됨

[표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예산 편성내역: 2026년

구 분	세부 내역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 16억 9,000만원(=115개사×1,500만원) - 115개사=2025년 1인 중증장애경제인 추정 수(11,519개사) ×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최초 5년간(2013~2017년) 연평균 지원비율(1%) - 1,500만원=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월 125시간(유사 제도인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무시간) × 95%(중도퇴사 등 감안한 참여율)
사업운영비	☐ 9,000만원 - 현장실사,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비용 등
계	17억 8,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 내용 및 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예산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1인당 1,500만원)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95:5)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규모를 추정

- 서비스 이용 중증장애경제인 모두 제1유형(업무보조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연내 1,500만원이 전액 지원된다고 가정

□ 1인당 부가가치세 면제액에 적용대상 인원을 곱해 추정 시 재정수입은 2026년 기준 672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적용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을 면제하되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부분면제의 개념임
- 업무지원인 서비스 공급 단계의 매입세액을 별도로 추정하기 어려워, 해당 단계의 부가가치율을 활용하여 면제 금액을 계산

- 부가가치세 면제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 10%
- 부가가치율은 동 서비스와 유사한 산업(‘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의 최근 부가가치율 평균(74.0%)을 반영

[표 4]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부분 세수효과 추계: 2026년 기준

(단위: 만원, %, 명)

1인당 정부지원금 ¹⁾ (A)	1인당 본인부담금 (B=A×5/95)	부가가치율 ²⁾ (C)	1인당 부가가치세 면제액 (D=A×B×C)	대상 인원 ¹⁾ (E)	총 부가가치세 면제액 (D×E)
1,500	78.9	74.0	5.8	115	672

주: 1) 정부지원금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편성내역 기준

2) 부가가치율은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2025.10.)의 최근 3년 평균치('22년 74.87%, '23년 73.67%, '24년 73.59%)임

- 업무지원인 서비스 등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할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2027년 697만원 등으로 추정
- 추계기간 세수효과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2027년은 고용노동부 고시³⁾, 2028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6.1.)⁴⁾ 반영
 -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실적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6년 예산 편성내역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5]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액 추정: 2027~2031년(귀속)

(단위: 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부가가치세 면제액	697	720	744	768	794

- 업무지원인 서비스 등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 시 세수효과는 2027년 5.2백만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3천 5백만원(연평균 7.1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자료가 연간 귀속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3)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8.05.

4) 최저임금 상승률 전망(%): ('27) 3.7 ('28e) 3.3 ('29e) 3.3 ('30e) 3.3 ('31e) 3.3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동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2천 6백만원(연평균 5.3백만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9백만원(연평균 1.8백만원) 감소 예상

[표 6]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 세수효과 : 2027~2031년(징수)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전체	-5.2	-7.1	-7.4	-7.6	-7.9	-35	-7.1
- 부가가치세(74.7%)	-3.9	-5.3	-5.5	-5.7	-5.9	-26	-5.3
- 지방소비세(25.3%)	-1.3	-1.8	-1.9	-1.9	-2.0	-9	-1.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